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	18

(2016. 2. 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월 21일(목)
- 제 출 자 : 송병길 의원 외 7명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월 21일(목)

## 4. 관계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5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 제정이유 >

최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발전 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마포구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안 제3조)
- 다.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5조)
- 라. 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안 제6조)
- 마. 하도급 기본원칙,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안 제7조~제9조)
-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사용(안 제10조)
- 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과 하도급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와 부조리를 방지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1조~제12조)
- 아. 이행실태 점검(수시, 정기) 및 평가(안 제13조)
- 자. 마포구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 및 마포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6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목적)~안 제2조(정의)에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나. 안 제3조(적용범위)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마포구 및 마포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함

다.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정책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고 공정 하도급 문화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함

라. 안 제7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에서는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

마. 안 제8조(하도급직불제)에서는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급대금 직불제)하고,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

바. 안 제9조(지급확인시스템 적용)에서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함,

다만,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안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함

아. 안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는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사 계약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자. 안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에서는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며, 또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불한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신속히 대금이 지불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하였음.

차. 안 제13조(점검 및 평가)에서는 구청장이 정기 및 수시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카. 안 제15조(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의 불황과 더불어 각종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도급 관련 업무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무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도급 관련부조리를 근절함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하도급 부조리 발생 주요사유로는 계약체결 담당 부서에서 계약자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불성실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시행과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등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부서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하도급 부조리 계약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향후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은 2016.1.25.~1.29.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타 관련법 등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이미 관악구외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른 자치구별 ‘대금e바로’ 의무 적용 권고 정책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정한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근절은 물론 효율적인 공정 하도급 관행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 센터” 운영실적 】**

○ 우리 구에서는 2011.4.1일부터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마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이 접수되어 조사되었음.

#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11.15.] [법률 제12580호, 2014.5.14.,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에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51호, 2015.7.24., 일부개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21호, 2015.5.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02-2133-8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3.10.4 >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

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⑤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21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치구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관리책임 부서	제정일
1	송파구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2.7.19
2	서초구	서초구 공정한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2.11.2
3	동작구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1.9.29
4	관악구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4.2.6
5	서대문구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3.4.5
6	도봉구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2.9.17
7	영등포구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2.7.19
8	강북구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2.11.2
9	종로구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013.6.14
10	양천구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재무과	2013.12.20
11	마포구	미제정		
12	강남구	미제정		
13	은평구	미제정		
14	중랑구	미제정		
15	광진구	미제정		
16	구로구	미제정		
17	중구	미제정		
18	금천구	미제정		
19	노원구	미제정		
20	성북구	미제정		
21	동대문구	미제정		
22	강서구	미제정		
23	용산구	미제정		
24	강동구	미제정		
25	성동구	미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보조자료

## ■ 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 ○ 시스템 주요기능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지급보장

\* 발주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원·하도급자가 관련 대금을 하위거래처 계좌로 이체토록 승인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지급내역 실시간 확인

\* 관련 대금이 최종 수령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가능

### ○ 대금e바로 현황

1. 대금e바로 실시일자

1)서울시 : 201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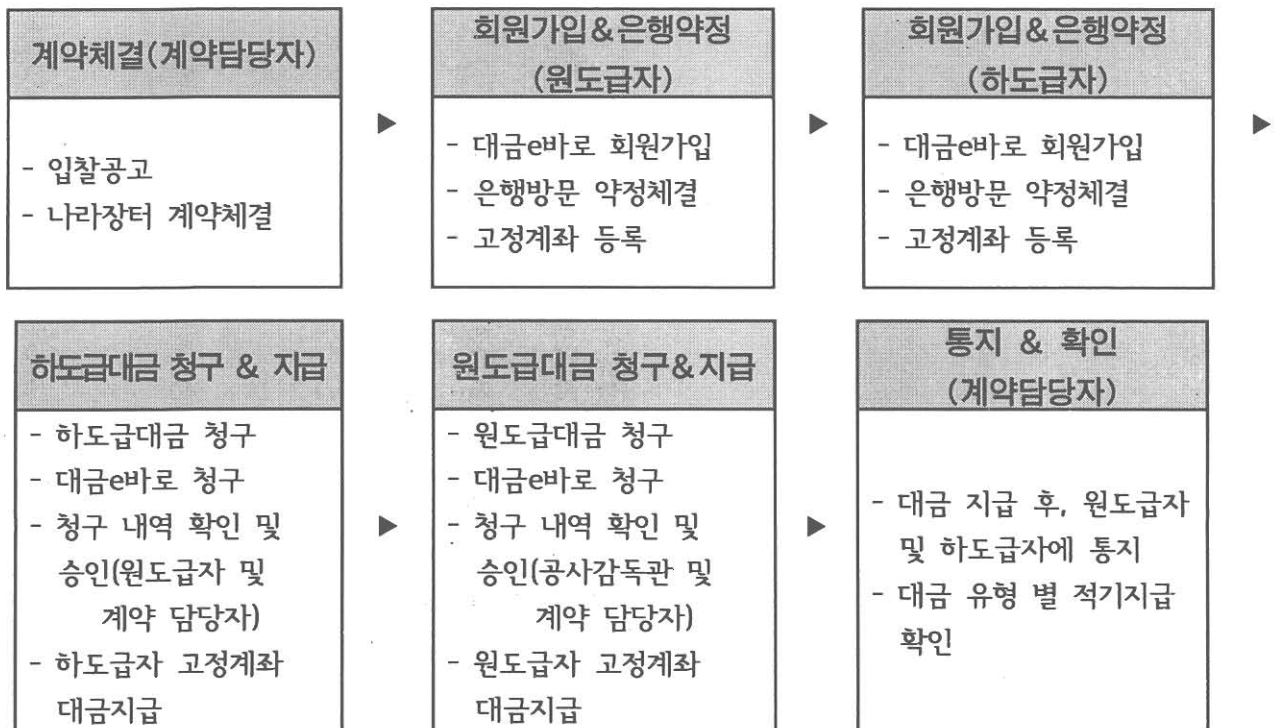
2)마포구 : ① 시범실시 - 2013. 5. 1.

② 전면실시 - 2014. 1. 1.

2. 이용실적

연도	계약현황	이용현황	이용비율
2014년	103건	49건	48%
2015년	137건	82건	60%

3. 이용절차



## ■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 ○ 하도급 직불제도란

-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 직불제도의 효과

- 원도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어 하도급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 ■ 하도급 실적 (30일 이상 공사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

연도	계약금액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 계약 공사 건수
2013	15,703백만원	8,342백만원	13건
2014	10,566백만원	4,372백만원	8건
2015	14,465백만원	3,569백만원	9건

##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건수 (감사담당관)

연도	접수건수	해결건수	비고
2011	2	2	장비대금 및 불법 하도급
2012			
2013			
2014	0	0	-
2015	7	7	노무비, 장비·자재대금